온열질환 예방조치 모범사례

1 (온도측정) 작업장소에 온·습도계를 비치, 체감온도를 측정하여 폭염 상황 전파

우수사례

- 체감온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에 따라 폭염 상황을 방송/전광판 등으로 전파
- 휴식알리미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, 체감온도를 간접적으로 확인

체감온도 측정 상황전파		
	〈폭염작업 체감온도 측정〉	〈휴식부여토록 전광판 활용 상황전파〉

2 (온습도 조절장치 등) 국소냉방장치 및 통풍시설, 그늘막 설치

우수사례

- 집중 근무장소에 국소냉방장치 설치, 상하차 공간에 제트팬 설치
- 건설 현장의 작업장소에 커튼식 그늘막 설치

온습도 조절장치		
	〈근무장소에 국소냉방장치 설치〉	〈상하차 공간에 제트팬 설치〉
그늘막 설치		
	〈아파트 공사현장 내 커튼식 그늘막 설치〉	

3 (휴식 부여)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

우수사례

-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혹서일/혹서기간 중 점심시간 연장 운영
  - * 금년도부터 체감온도 33℃ 이상일 때 오전/오후 휴게시간 추가 예정
- 쉼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동 현장은 차량을 활용하여 쉼터 제공

휴식 부여

기준온도	체감온도 33℃ 이상
기준시각	오전 10시, 오후 3시
적용범위	전사 공통 적용 (실내/외 장소 구분 없음)
운영방식	기존 휴게시간(10, 15시) 10분 연장

체감온도	휴게시간 10시	휴게시간 15시	비 고
33℃ 미만	10분 휴식	10분 휴식	현행 유지
33℃ 이상	20분 휴식	20분 휴식	+ 20분

* 혹서일 중식 휴게시간 연장과 별도 적용

〈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〉

〈쉼터 형식으로 고드름카 운영〉

4 (휴게시설) 태양광 패널 적용 휴게시설 또는 작업장소에 쉼터 설치

우수사례

- 옥외 작업장소에 태양광 패널 적용 휴게시설 설치 등
- 작업장소가 넓지만 1분 내 접근 가능하도록 곳곳에 쉼터 설치

휴게시설

〈태양광 패널 휴게시설 설치〉

〈주된작업장소에 쉼터 설치〉